

제 224 호

1972.4.22

등록번호 : 제39호

등록년월일 : 1953년6월18일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인 : 공보실장 손활수

인쇄 : 서울특별시중앙발간실

# 시 보

차 례

조 례 ..... 1

고 시 ..... 5

1.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역할을 갖는다.

## 최을특별시

## 시 보 세 분 목 차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조    |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제 702 호 | 서울특별시립 워킹연구소 제수수료 징수조례               | 1 |
| 제 703 호 |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과세면제에 관한<br>특별조례 | 3 |
| 2. 고    |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
| 제 43 호  | 도시계획 소로 일부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
| 제 48 호  |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
| 제 51 호  | 도시계획 소로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|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양택식  
1972년 4월 22일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702 호

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  
제 수수료징수조례

제 1 조 서울특별시립위생연구소에 검사, 시험, 분석, 감정과 소분종합유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 2 조 건조의 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 3 조 ①검사, 시험, 분석, 감정과 소분종합유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입증지를 첨부할

별 표

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으로서 납부할 수 있다.

②건항대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를 취소하여라도 환부하지 아니한다. 제 4 조 관공서 또는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리) 서울특별시조례 제 18 호 서울특별시립위생시험소제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| 종              |    | 별                | 건수 | 공시품분량      | 수수료  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의약품 및<br>화공품검사 | 약품 | 약전적합(생물학적시험은 별도) | 1건 | 소장이 별도로 정함 | 2,000 |
|                |    | 비타민류-성분정성        | -  | -          | 200   |
|                |    | 비타민류-성분정량        | -  | -          | 600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    | -  | -          | 200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    | -  | -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 |    | 양생물질 역기 시험       | -  | -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 |    | 발효성물질 시험         | -  | -          | 1,000 |
|                |    | 멸균도 시험           | -  | -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 |    | 화공약품의 품질검사       | -  | -          | 2,000 |

0865

| 종             | 별                  | 진수           | 공시품분량 | 수수료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| 화 장 품              | 물 질 검 사      | 1건    | 소장이별도로 정함  | 2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위생상 유해여부     | "     | "          | 1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| "     | "          | 3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음식물 검사        | 음식물용기용품            | 물 질 검 사      | "     | 고체 300 그램  | 2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위생상 유해여부     | "     | 액체 1리터이상   | 2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| "     | 고체 200 그램  | 2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| "     | 액체 500리터이상 | 6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식류첨가물공전시험    | "     | "          | 2,000 |
| 음식물 용품<br>검 사 | 음식물용기구             | 용 기 검 사      | "     | 1 개 이상     | 2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정성검사      | "     | "          | 3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정량분석   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환경위생시험        | 특수공기및오수            | 특수-구기검사      | "     | 물 1 리터 이상  | 2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분노정화조수       | "     | "          | 1,5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기중성분 정성분석   | "     | "          | 2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공기중성분 정량분석   | "     | "          | 400   |
| 수 질 조 사       | 물 빛 명 실            | 음 조 적 부      | "     | 물 2 리터 이상  | 1,5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성분석    | "     | 물 1 리터 이상  | 2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| 공업용및광천             | 공 업 용 적 부    | "     | 물 2 리터 이상  | 3,000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광 기 적 부      | "     | "          | 3,000 |
| 방사능검사         | 물 및 음식물의           | 방사능 측정       | "     | 물 1 리터 이상  | 500   |
| 현미경학적<br>검 사  | 배설물 분비물<br>혈액 기타액체 | 염색검정검사       | "     | 50 그램 이상   | 1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특수검정검사       | "     | "          | 200   |
| 세균배양검사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장 배 세 균 검사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 반 세 균 검사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결 핵 균 검사  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세 균 저항력 검사   | "     | "          | 500   |
| 혈청학적검사        | 혈 액                | 응 집 반응 검사    | "     | 5 그 램 이상   | 1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침 각 반응 검사    | "     | "          | 1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보 지 결합 반응 검사 | "     | "          | 200   |
| 생물학적검사        | 배설물분비물<br>형 액      | 일성분의 정성시 분석  | "     | 50 그램 이상   | 100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일성분의 정량분석    | "     | "          | 200   |

| 종          | 별       | 진수    | 공시품분량                 | 수수료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동물용 요하는 시험 | 마 우 스   | 11진   | 네 수                   | 200   |
|            | 모 트 못 드 | "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 500   |
|            | 가 토     | "     | "                     | 700   |
| 살균살충검사     | 살균살충제   | 살균 시험 | 소장이닐도르 <sup>3</sup> 화 | 1,000 |
|            |         | 살충 시험 | "                     | 400   |
| 분봉         | 약품및식품류  | 분봉수수료 | 2키로그람이상               | 300   |
|            |         | 분봉용기  | "                     | 5     |
| 기타         |         | 성적서사본 | "                     | 50    |
|            |         | 번역본   | "                     | 100   |

비 고 : ○ 공해검사요금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징수함.  
 ○ 이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험은 그의 유사한 시험 수수료에 준하여 소장이 정한다.  
 ○ 특수한 동물을 사용시는 그 설비를 추가할 수 있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 1972년 4월 22일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703 호

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

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

제 1 조 ( 목적 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의 건축활동과 도시불량지구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주차용 건물의 건축을 정리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과세면제대상 및 세목 ) ①영등,

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여의도지구 조성사업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.

다만, 무허가건물과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이니하다.

②건항에 규정한 지구내에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과세공공단체(이하건축주라 한다)가 건축한 건축물을 최초로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최초로 양수한자라 함은 당해 건물의 건축비 전액을 부담(자담)하고 준공후에 이를 양수하는 것을 약정으로 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1. 대한주택공사

- 2. 농시개발조합
- 3.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회
- 4. 배운조합과 동연합회
- 5. 삼공회외소
- 6. 대한적십자사
- 7. 변호사회,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
- 8.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회

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차용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,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내에 경당한 사용임이 그 용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세면제를 받은후 당해 건물을 주차용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,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일시에 징수한다.

- 1. 1 등의 건물내에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건물로서 주차장 면적이 당해 건물의 총면적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용건물
- 2.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한층의 설치한 주차장면적이 건축법·시행령에 정하는 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당해층의 총면적의 100분의 80이상인 당해층

④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소공, 무교도시개발사업지구중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초 또는 철거되었거나 새로이 건축된 건물을 리츠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

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. 다만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2년내에 건축용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면제기간중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,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일시에 징수한다. ⑤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지상건물이 있거나 기타 사용수익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사무처리위임) 전조에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사무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을 관할하는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과세면제신청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, 재산세 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(시행기간) ①제2조제1항내의 제3항의 규정은 1973.12.21까지 과세원인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제 2 조제 2 항중 소공, 무교도시개발  
지구에 대하여는 1976 년 12 월 31 일까지

과세원인이 발생한 것에 적용한다.

고 시

도시계획소로써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.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

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
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차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적제 보임.

1.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산 1 번지내

3. 노선 변경 조서
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 | 폭원 | 연장 | 기           | 검          | 중 | 검 | 비고  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---|
| 기경 | 소로 | 3  | 289 | 6  | 86 | 북아현동 1-1215 | 북아현동 1-876 |   |   | 복원주소 |
| 변경 | "  | 4  | 243 | 4  | 88 | "           | "          |   |   |      |
| 기경 | "  | 3  | 290 | 6  | 24 | 북아현동 1-1213 | 북아현동 1-839 |   |   |      |
| 변경 | "  | 4  | 244 | 4  | 24 | "           | "          |   |   |      |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.

1972. 4. 17

(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에 보관)

서울특별시청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

하천공작물설치허가

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고시함

하천공작물 설치물 하천법 제 23 조 및

다 음

| 허가<br>년월일 | 허가장소                   | 수면종류         | 공사목적        | 공작물규모  | 공사기간           | 허가받은자의<br>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
| 72. 4     | 영등포구<br>육성동 97-<br>2 앞 | 하천<br>(준용하천) | 복개루<br>통로확보 | 복개공사<br>폭 = 2.6 ~<br>3.5 m<br>높이 = 2.23 m<br>~ 3.6 m<br>길이 = 146 m | 허가일로부터<br>4 개월 | 영등포구육성동<br>97-2<br>구식회사중계상<br>과 대표 안길구 |

1972. 4. 21

서울특별시청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51 호  
 도시계획소로 신설  
 1. 서울특별시관내 도시계획소로 설정을  
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  
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.  
 3. 노선 신설 조서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 
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 
 에게 보임.
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| 연장  | 기         | 점          | 중 | 점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-|
| 신설 | 소도 | 1  |    | 10 | 610 | 용산동2가5-98 | 용산동2가5-545 |   |   |    |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 
 (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)

1972. 4. 22

서울특별시장